

## <자료 :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ILO 전문가위원회 권고>

### (4) 2000년 제71차 회기에서의 전문가위원회 권고 (2001년 총회보고)

1. 본 위원회는 최근 일련의 회기에서 2차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두가지 문제에 대한 협약의 적용에 대해 고려하여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 즉 종군“위안부” 문제와 기업에 의한 전쟁중 강제근로 문제가 그것이다. 본위원회는 지난 번 조사 이후 근로자조직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이 사건을 더 상세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다수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고 동시에 본 사안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개선하는 (일본)정부의 상당수의 답변이 있음을 유의하고 있다.

2. (일본)정부의 보고서에서, (일본)정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전쟁과 관련한 배상, 재산의 문제와 청구권의 문제를 관련 정부와 이미 해결하였다는 점과,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이러한 문제에 속한다는 점을 ((일본)정부는) 처음부터 명백하게 밝혀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ILO에 의해 협의되어서는 안된다고 간주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중국, 대한민국, 미국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쌍무적 평화조약 기타 관련 조약 및 합의를 들고 있는데, 이들 조약들은 이러한 국가의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별적 청구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다수의 관련 국가에 대해 상당한 개발원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죄표시를 들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문제는 ILO에서 현재 심의대상으로 하기에는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번이 전문가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연합(Rengo)도 일본 정부의 보고를 지지한다”는 것과 “연합은 전문가위원회가 이들 사건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한 연합의 2000년 10월 20일자 서한도 들고 있다.

3. 본 위원회는, 보상문제가 조약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법률의 문제로서는(as a matter of law) 타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이 주제에 대한 노동조합들의 방대한 의견을 계속 다루는 것, 보상을 위한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의 전개에 유의하는 것, (일본)정부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위원회는 다음 회기에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to do so again) 불필요하게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4. 본 위원회는 아래에 기술하는 근로자조직의 의견에 더하여 전일본조선 기술노동동경지역평의회(東京地評)로부터 2000년 11월 1일자 서한에 의한 의견도 접수하였다는 점에 유의한다. 이 서한은 희망한다면 코멘트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본)정부에 전달하였고, 그러한 코멘트가 도착하면 이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 I. 전쟁 “위안부” (Wartime "comfort women")

5. 종전 권고에서, 본 위원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및 그 기간 중 소위 군 “위안소”에 억류되어 군대에 대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와 성적 학대에 관하여 유의하여 왔다. 본 위원회는 그러한 행위는 (강제근로금지)협약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본 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한 수인할 수 없는 침해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 구제는 (강제근로금지)협약에 대한 책임있는 주체로서의 (일본)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여왔고, 또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일본)정부가 할 것을 본 위원회가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왔다. 1998년 기준적용에 관한 총회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본 사건이 총회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지만 (일본)정부는 노동조합, 관련 여성의 대표적인 조직 및 다른 정부와 함께 만나 희생자의 대부분의 기대를 충족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본 위원회는 유의하고 있다.

6. 본 위원회는 또한 종전 권고에서 (일본)정부가 다음을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다. 즉 (일본)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보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국민의 속죄를 완수하고 관련 여성에 대해 기금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1995년 설치된 “아시아여성기금”(“Asian Women’s Fund” (AWF))에 대하여 최대한의 가능한 지원을 (일본)정부가 제공하겠다고 (일본)정부는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희생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상당한 의료 및 복지원조를 제공하여 왔다는 (일본)정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는 유의하고 있다. 일본에 의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조직들은, (일본)정부에 의해 희생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의 사죄도 없었기 때문에 아시아여성기금은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 기금에 기한 원조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170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 조직은 아시아여성기금의 원조를 대부분의 관련 여성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7.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몇 근로자조직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00년 9월 8일 서한에서 전쟁중 성노예의 문제에 관한 UN인권소위의

입장, 특히 제도적인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유사관행에 관한 Gay McDougall보고서(UN doc. E/CN.4/Sub.2/2000/21)에 관한 정보와, 2000년 UN소위에 의해 채용된 동일 문제에 관한 결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른 조직에 의해서도 유사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이하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동 보고서는 부분적으로 일본에 대해 다루기는 하였으나 결의는 일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신에 장래의 그리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는 점을 (일본)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현재 결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가의 권리·의무와 개인의 권리·의무는 조약, 평화협정, 특사 또는 기타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국제법의 문제로서(as a matter of international law), 소멸될 수 없다”고 한 초기의 특별보고에 근거한 결의(UN document E/CN.4/Sub.2/RES/1999/16)에서 표명된 견해를 유의하고 있다.

8. 또한 두 개 노동조합은, 전쟁 “위안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보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 법정에 계류중인 8건의 소송을 지적하고 있다. 본 위원회의 종전 의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1998년 4월 山口地裁關西支裁가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일본)정부에 대하여 3명의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지만 1998년 5월 廣島高法에 항소되었고 현재 계류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최초 판결에서 판결이유로 하고 있는 논리는 1999년 8월 다른 소송에서 동경고법에 의해 기각되었다는 점을 진술하고 있다. 두 노동조합이 언급하고 있는 소송 중에서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세 사건은 하급심에서 정부에 유리하게 결정하였고, 다섯 개 소송은 여전히 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이다.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해 이들 소송과 관련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9. 다른 의견에서,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the Netherlands Trade Union Confederation (FNV))은 1999년 11월 23일자 서한에서, “일본명예배상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에 의해 제공된 문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정부는 그 정보는 근로자조직이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서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견을 다루는 관행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항상 간주하여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 네덜란드노동조합총연맹의 문건은 “위안부”로 강요받은 네덜란드 국적의 여성에 대한 보상을 일본이 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답변에서, 네덜란드에서 전쟁 “위안부”의 인정이 네덜란드 당국에 의해 행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아시아여성기금은 “관련되는 네덜란드 국민과 협의하여” 예컨대 의료 및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네덜란드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조치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왔다. 또한 (일본)정부는

2000년 2월 21일 일본-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네덜란드수상이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10. 본 위원회는 상당수의 청구와 행동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점에 유의한다. 다수의 청구권자들이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보상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일본)정부가 관련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하여, 이들의 기대를 충족하는 방법으로 더 늦기 전에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할 것을 본 위원회는 희망한다.

## II. 전시에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강제근로(Wartime industrial forced labour)

11.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시 공장에서 근로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국가에서 수천명의 사람을 강제징용한 것이 (강제근로금지)협약에 위반한다고 본 위원회는 이미 결론내린 바 있다. (일본)정부는 그 답변에서 제2차대전 이후의 조약에 의해 그리고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사과에 의해 모든 법적 청구권이 해결되었으며 더 이상의 개별적인 청구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중국,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미국을 포함한 몇 개국 정부와 이에 관하여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일본 내에서 소송이 계류중이며 7건은 한국인에 의해, 7건은 중국인에 의해 제기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에 의한 2건과 중국인에 의한 2건에서 하급심은 (일본)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다른 10건은 지방법원에서 심리중이다. 한국인이 제기한 3건의 다른 소송은 징병과 관련한 회사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의 화해되었다.

12. 그러나 본 위원회는 회기 중에 계류중인 사건 중 하나가 화해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카지마社는 전쟁 중 하나오카 동광산에서 사망한 강제징용된 중국인 노무자의 유족과 친척에 대한 보상으로서 5억엔(약 4백5십만달러)의 기금을 중국적십자에 기탁하기로 합의하였다. 본 위원회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이 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다른 회사에 대한 유사한 소송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3. 본 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한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이 이전 전시 노예적 노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받은 유럽과 북미 정부 및 기업의 반응과, (일본)정부 및 일본 기업의 반응을 비교하였던 것에 유의한다. (일본)정부는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배경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이한 국가에 의해 취해진 행동을 단순하게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은 종전 후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상,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방법에 의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일본)정부는 지적한다.

14. 전일본조선기계노동조합 관동지역평의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해 언급하는 의견을 1999년 10월 1일자 서한에서 제출하였다. 關東地評은 캘리포니아주는 1999년 6월 2차대전시 강제근로 희생자들에 대하여 제소기한을 연장하는 입법을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답변에서 일본과 미국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의해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해결하는 완전한 합의를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2차대전 중 미국인 전쟁포로 중 일부가 일본 기업 및 미국의 그 자회사에 대해 일련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년 9월 21일 북캘리포니아연방지방법원 샌프란시스코지원은 평화조약에서 미국과 그 국민에 의한 일본에 대한 모든 보상소송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고 (일본)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다른 유사한 소송이 계류중이지만,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회는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소송에 대한 정보도 접수하고 있으나,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관동지평은, 전시 강제근로로에 의해 혜택을 받은 일본 기업(또는 그 승계기업)에 대한 소송 중 일부는 기업에 의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화해되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15. 태국과 미얀마에서 이루어진 강제근로에 대한 인도네시아 유족에 의한 청구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이 문제도 인도네시아정부와의 포괄적인 평화조약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전투기 제조공장에서 일본법령이 적용되던 대만에서 8,000명 이상의 아동이 강제징집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정부는 대만 당국과 재산 및 청구권의 문제에 대하여 교섭하였으나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교섭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 군대에 복무한 대만인 군인 및 민간근로자에 대해서 특별입법에 의해 “위로금”(“condolence money”)을 지급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16. 위에서 거론한 정보에 비추어 보면, 다수의 종전 포로 및 기타의 사람들은 국가간 평화조약이나 기타 협정에 의해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였다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는 점, 다양한 법정에서 다수의 소송이 계류중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희생자들의 나이와 급속한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여 (일본)정부가 희생자 및 (일본)정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희생자들의 청구권에 대해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본 위원회는 다시한번 표명한다.